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5. 1자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대폭 개정·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버섯재배소독기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하고, 메추리, 토끼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에도 난방사육용 면세유류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 또한, 비닐하우스용 난방기에 대하여 난방기 대수·용량에 따라 면세유류를 공급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재배면적·작목·지역에 따라 면세유류를 차등 공급하게 된다.
 - 이는 중고품 등 과도하게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 소요량에 맞는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종전에는 1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만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모든 농가가 카드만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 특별관리 대상농가를 년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에서 1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로 특별관리 확대한다.

- 또한, 개정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5월중에 지역농협 직원 및 면세유 대량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 -1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 신고, 농업기계별·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②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 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는 육묘, 채소,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소, 양돈, 양계, 오리, 누에, 관상조류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에 한하며,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당해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매 2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기간은 11. 1부터 11. 30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하 조합장 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세유류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및 지역농업협동조합별 한도량 배정)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유힬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이내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이내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연간한도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공급방법)

① 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공급은 별표 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조건표와 영농규모, 재배작목을 참고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 농업용 난방기는 별표5, 7의 조건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농업용 난방기 조건표에 표기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고 조건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수해자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다.(별표8.) 단, 2008. 7. 1부터는 지역별 최저온도, 작물별 야간온도설정기준 등을 적용한 농업용 난방기 개선조건표(별표6)와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③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감안한 농가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비치된 별표9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④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11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사대상 농업기계(10개 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용 난방기(농업용 온풍난방기, 농업용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 이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⑦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사실

을 조합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 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인인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 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⑨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배정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

① 농업용 면세유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 연도 1. 1일부터 12. 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 시는 카드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는 주작업장 인접 시·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연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다.(생략)

④ (생략)

제8조(보고사항)

(생략)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2항에 의한 첫 신고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하되, 제5조2항의 농업용난방기조건표(별표6)는 2008.7.1부터 적용한다.

2. (폐지일)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0호, 2007.3.7) 및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